

	규정	문서번호	TWP-A214	
		제정일자	1996. 03. 01.	
	외래교원 임용 및 시간강사 위촉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목 차

부칙
별표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1996. 03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	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	<h1 style="margin: 0;">규정</h1>	문서번호	TWP-A214	
		제정일자	1996. 03. 01.	
	<h2 style="margin: 0;">외래교원 임용 및 시간강사 위촉 규정</h2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의 초빙교원, 겸임교원 임용 및 시간강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초빙교원,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교육관계법 및 교수자격인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 및 위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
② 초빙교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1.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등에서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근무한 유경험자로서 임용일 현재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2. 교수 능력 또는 경험자로서 학생진로 지도가 가능한 자
3. 1주당 1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
4. 타 대학에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자

③ 겸임교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1. 담당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그 전문 경력자
2. 교수 능력 또는 경험자로서 학생진로 지도가 가능한 자
3. 현직 소속기관의 동의를 있는 자로 1주당 1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

④ 시간강사의 위촉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<개정2012.08.24>
2. 공인된 교수자격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의 자격 소지자
3. 담당 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또는 강의 경력이 있는 자

제3조(임용과 위촉방법) ①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의 임용은 공개초빙 후 임용절차에 따라 총장의 재가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며, 임명장(별지:1)을 수여한다.

② 시간강사의 위촉은 공개초빙 또는 학과장의 추천 후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하며, 위촉장(별지:2)을 수여한다.

③ 초빙교원,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,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한다.

제4조(임용보고) 초빙교원, 겸임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그 임용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임용 및 위촉의 결격) 초빙교원,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또는 그 위촉을 하지 아니한다.

1.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(학생 '교수강의 평가' 내용 참조)

	규정	문서번호	TWP-A214	
		제정일자	1996. 03. 01.	
	외래교원 임용 및 시간강사 위촉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2. 기타 총장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담당과목 및 시간) ① 담당과목은 전공 또는 현·전직 전문 종사직의 관련 교과목과 본인 저술분야로 한다.

② 강의 과목수는 3과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이 담당할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 이상, 시간강사는 2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강의료 지급) 강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의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	규정	문서번호	TWP-A214	
		제정일자	1996. 03. 01.	
	외래교원 임용 및 시간강사 위촉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4	페이지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- 호

임명장

성명 :

생년월일 :

년 월 일자

초빙조교수에 임함.

동원대학교 전공 근무를 명함.

임용기간 : . . ~ . . (년)

년 월 일

동원학원 이사장 이 정 훈

제 - 호

위 촉 장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귀하를 시간강사 위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
하여 다음과 같이 학년도 제 학기 시간강사로 위
촉합니다.

- 다 음 -

1. 전 공 :
2. 교과목 및 시수 :

년 월 일

동원대학 총장